

2026년도 (재)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(안)

의안 번호	317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. 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6년 (재)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 - ※ 「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」 행정안전부 해석기준
 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2. 주요내용

- (재)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: 1,166,621천원
 - 필 요 성 :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시민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
 - 사업내용 : 시민의 참여를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, 자원봉사자 인정보상,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세부내용

□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6년 본예산	2025년	증감액		
1	(재)하남시 자원봉사 센터	1,166,621	824,073	342,548	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예산 증가	

□ 출연대상

○ 설립근거

-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, 민법 제31조 내지 제97조
-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 : 2013. 1. 1.
- 설립목적 :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·장려함으로써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.
- 소재지 :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15, 6층(신장동, 하남종합복지타운)
- 조직현황



구분	합계	임원	정규직	계약직	파견공무원
정원	11	1	10	-	-
현원	10	1	9	-	-

○ 기능 및 주요사업

- 자원봉사자 연계 및 배치 상담
- 자원봉사 전산 자료 관리
-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및 지원

□ 출연금액 : 1,166,621천원(2025년 824,073천원, 41.5% 증)

○ 증 감 액 : 342,548천원

○ 증감사유

-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예산 증가
 - 자원봉사캠프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

□ 출연근거

○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기반 강화
- 시민 참여 확대 및 공동체 의식 고취
-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

□ 검토의견

-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
- 2026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(2025년 실적) 결과와 2026년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
- 부서검토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출 연 금			비 고
	2026년 반영액	2025년 출연금	증감액	
자원봉사센터 운영	1,166,621	824,073	342,548	▶ 전년대비 41.5% 증가

※ 2026년도 예산(안) 1,394,449천원 중 시 출연금 1,166,621천원/ 국고보조금 77,828천원/ 순세계잉여금 150,000천원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자원봉사센터 설치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센터를 설립 한 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의 예산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센터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센터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센터장은 결산 관련 자료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